

영주시 공고 제2022 - 427호

「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16일

영 주 시



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옥외광고물 등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여 각종 범죄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신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협의회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나.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 등에 대해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(안 제14조의2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(참조 도시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E-mail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

- 우 편 : (36132)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
영주시장(참조 : 도시과장)
- 연락처 : (054)639-6663 / FAX : (054)639-6679
- E-mail : yhj555@korea.kr

<붙임 1>

영주시 조례 제 호

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구성한다.”를 “구성하되, 위촉직 의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광고물 등의 설치주소 표기) ①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 등에 대해 해당 광고물의 설치 주소를 범죄 및 화재신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표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 설치 주소를 표기할 때에는 해당 광고물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주민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<u>구성한다.</u></p> <p>③~⑦ (생략)</p>	<p>제10조(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~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14조의2(광고물 등의 설치주소 표기)</u> ①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 등에 대해 해당 광고물의 설치 주소를 범죄 및 화재신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표기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 설치 주소를 표기할 때에는 해당 광고물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